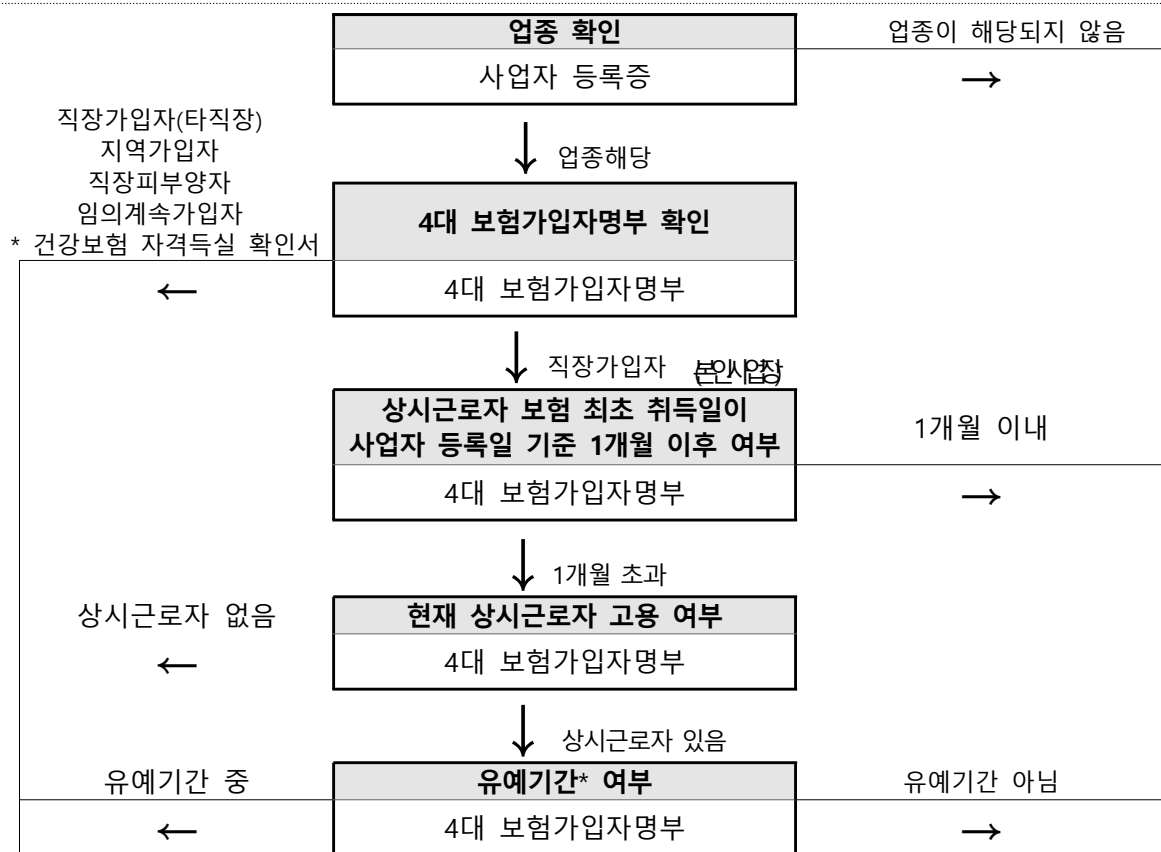


[참고 3]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

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

- ◆ **업종 확인** :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,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
 - *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
- ◆ **상시근로자 확인** :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, 단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발급이 제한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
 - * 직장가입자(타직장), 지역가입자(세대주, 세대원), 직장피부양자, 임의계속가입자 등
- ◆ **유예기간** :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 - *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

<준비서류> 사업자등록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보험가입자명부



※ 유예기간 판단 참고

1. **유예기간** :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
(예시) '17.5.1일 창업, '17.7.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→ 유예기간은 '17.7.1~'20.12.31까지임
2. **유예기간 종료 후** :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,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,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
(예시) '17.5.1일 창업, '17.7.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
→ 유예기간은 '17.7.1~'20.12.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. 다만, '18.3.1~'18.3.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, '18.4.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, 재유예기간은 '18.4.1~'21.12.31까지임

지원대상

지원대상 아님